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6)

◇ 제·개정 이유

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(안 제4조)
- 나.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(안 제6조)
- 다.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(안 제8조)
- 라.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(안 제17조)
- 마.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(안 제19조)